제33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6. 10. 12.(월)

달 성 군 의 회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 ·····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73호

○ 제 출 일: 2026년 9월 23일

○ 제 출 자: 김은영 의원 외 2명

2. 제안사유

○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안 제14조제2항제7호~제12호)

4.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국가를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제2항제7호부터 제12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하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상징적·의례적 예우를 넘어 실질적인 복지혜택으로 환원하고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국가 차원의 보훈 의료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보훈과 병역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과 병역의무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조문에도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74호

○ 제 출 일: 2026년 9월 23일

○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외 2명

2. 제안사유

○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출생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안 제2조)

○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제4조)

○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규정(안 제5조~제6조)

○ 환수조치 규정(안 제7조)

4.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인구전략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적용받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노무제공자·예술인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소득 공백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시행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출산으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1인 자영업자 등의 안정적인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출산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보호하고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출산지원의 격차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7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부적정한 수급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은 출산으로 인해 소득 공백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출산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국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기존 제도의 틀을 활용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실효성도 기대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조문에도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75호

○ 제 출 일: 2026년 9월 23일

○ 제 출 자: 김명화 의원 외 2인

2. 제안사유

○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피해 방지 및 방수·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옥상 비가림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신고·관리 근거가 부족해 건축행정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가림시설의 적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확대(안 제22조제3항제8호 신설)

-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무단 증축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또한, 비가림시설로 인한 일조권 침해나 피난·방화 및 구조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기준을 명시하여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난립을 방지하고자 함.

• 안 22조제3항제8호 신설 내용

-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3층 이하)의 옥상에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거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규정
- 시설의 최고 높이 1.8m 이하이며 지붕하단부 높이는 1.2m 이하일 것
- 이격거리 확보 등을 통해 화재 시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할 것
-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형태의 경량철골조로 설치할 것
- 창고·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4. 관계법령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방수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옥상 비가림시설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여 무단 증축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신고 후 축조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최근 대구광역시에서는 2026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건

축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에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옥상에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비가림시설’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도 광역의 규정내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등록하도록 하여 기존 임의 설치되었던 옥상 비가림시설을 신고·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군민 편의와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의 목적이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부담완화인 만큼, 비가림시설로 인한 또 다른 안전문제 예방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